

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

신청인	성 명(대표자)	생년월일 (외국인은 국적)
	주 소	
	업체명	전화번호

심사목적	☐ 직접판매 ☐ 생산판매	
------	---	--

심사결과	☐ 적합	
	☐ 조건부 적합	조건
	☐ 부적합	사유

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붙임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보고서 1부. 끝.

년 월 일

국립수산과학원장



이 심사결과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, 그 외의 사항에 의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